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안내 공고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업이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IP가치평가를 받고, 결과물인 IP가치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에 본 협회의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장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
 - 지식재산평가란 지식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
- (사업명)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 * 2025년 지원사업 기준 안내 공고이며, 2026년 사업 공고 시(3월 예상) 추가 업데이트 또는 수정되는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 (수행기관) 특허법인 RPM
 - *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원사, 지식재산처 지정 ‘발명 등의 평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가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의 80~90% 지원
- 투자유치 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IP)평가 보고서 제공

3 지원 한도 및 지원율

□ (지원한도)

-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구 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가치평가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 우대 지원율(최대 10%)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구분	내용	우대율
2030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7년생~2009년생)인 기업	10%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수출 실적보유 기업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3. 1. 1 이후)	5%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총 8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총 9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총 90% 지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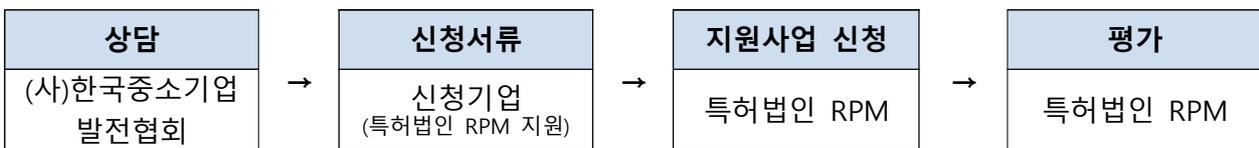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이며, 평균적으로 공고일 1개월 이내 마감

□ (신청방법)

-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와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수행기관인 특허법인 RPM에 제출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별지 서식의 경우 협력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No	구분	제출서류명	수량	비고
1	사업 신청서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2		<input type="checkbox"/> 등록특허 : 특허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출원특허 - (공개 전) 출원사실증명서 및 명세서가 포함된 출원서 - (공개 후) 공개특허공보	1부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최근 2개월 이내
4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5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1-2호
6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1-3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아님)	1부	별지서식 제1-4호
-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중견기업 필수제출)	각 1부	최근 2개월 이내
7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8		평가보고서 사본	1부	직인날인된 최종본
9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10		평가계약서 사본	1부	-

○ 우대 지원을 사유별 적격 증빙

구 분	적격 증빙
2030 청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생년이 1987년 이후 2009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경영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일 것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에서 인증서 출력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지원기구 매입특허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 (보유)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매매계약서 제출 - (예정) 기술이전 협약서 제출(발급기관 : 회수지원기구 전담기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확인서 - 부처별 선정 확인 공문 제출 -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기간 이내일 것
수출실적 보유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실적증명서(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 증명서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최근 3년(23. 1. 1. 이후) 이내 수출 실적 보유일 것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확인서 사본(발급기관: 벤처기업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비즈확인서 사본(발급기관: 이노비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24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확인서는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관기관 직인 포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
녹색기술 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장애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국가보훈처)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문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 02-858-3411 / venture@ceo-korea.org
 -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Q1. 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에서 운영하시는 사업인가요?

☞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며,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중에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공유드리고 서류 준비, 지원사업 신청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2.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업(사업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1)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5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며, (2)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3.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경우, 평가 시 설정한 활용 목적에 따라 가치 추정에 사용되는 요소 및 방법론이 다르며,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목적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고서상의 기술, 권리, 시장, 사업성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IR 자료, 사업계획서 자료 등에 활용은 가능합니다.

Q4. 국고지원금은 신청 기업에게 지급되나요?

☞ 국고지원금은 지식재산평가를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Q5. 신청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은 국고지원금이 80~90% 지원되며, 자기부담금 10~20%인 150~300만원과 총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150만원은 신청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되고 국고지원금이 평가기관에 지급되면 총 평가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가 발행되기에 부가세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